

## 2015년판 『건축기사 4주완성』 5차 정오표 [2015.5.12.]

| page     | 오                                | 정                                |
|----------|----------------------------------|----------------------------------|
| [시공] 197 | 공사감리자와 협의 > 특기시방서 > 표준시방서 > 설계도면 | 공사감리자와 협의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 2015년판 『건축기사 4주완성』 4차 정오표 [2015.3.4.]

| page     | 오                        | 정                         | 비 고                  |
|----------|--------------------------|---------------------------|----------------------|
| [설비] 572 | 비상콘센트설비<br>①설치 : 7층 이상의  | 비상콘센트설비<br>①설치 : 11층 이상의~ | 15.1.6개정사항<br>☞ 하단참조 |
|          | 핵심PLUS [예1]              | 답: 나→라                    | 15.1.6개정사항           |
| 586      | [문제48]해설<br>②설치 : 7층 이상의 | ②설치 : 11층 이상의~            | “                    |

### ☞ 하단참조 내용

#### ☞ 572p 수정부분 관련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에서  
최근 개정법 15년1월6일(시행일 15.4.7)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층수로 11층 이상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이 15.4.7일자이므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개정사항이기에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NFSC 504)이

11층→7층→11층 그리고 지하층 포함에서 지하층 제외로...

설치높이 1~1.5m→0.8~1.5m로...

최근 잦은 법개정으로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15년판 『건축기사 4주완성』 3차 정오표 [2015.2.27.]

| page     | 오                     | 정                        | 비 고              |
|----------|-----------------------|--------------------------|------------------|
| [설비] 547 | 수격작용..⑤감압밸브를사용할 때     | ⑤감압밸브를 사용 <b>하지 않을 때</b> | 579p [18]해설란도 수정 |
| 642      | [60]해설..야간23:00~08:00 | 야간23:00~ <b>09:00</b>    |                  |
| [법규] 693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29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30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32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34      |                       | ☞ <b>하단참조</b>            | 해당부분 법에서 삭제      |
| [과년도문제]  |                       | ☞ <b>하단참조</b>            |                  |

### ☞ 하단참조 내용

☞ 693p [표] 수정부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 ① 건축법 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 **삭제**
- ③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④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829p [표] 수정부분(개정)

|      |  |
|------|--|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br>• <b>시가지방재지구</b>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br>• <b>자연방재지구</b>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

☞ 830p [표] 수정부분

|      |                |  |  |  |             |           |
|------|----------------|--|--|--|-------------|-----------|
| 방화지구 |                |  |  |  | 구조, 재료 및 설비 | 건축법 및 시행령 |
| 방재지구 | <b>시가지, 자연</b> |  |  |  |             | 도시계획조례    |

☞ 832p 학습포인트 수정부분(적색부분 추가)

### 1. 지구의 세분

- ㉠ 경관지구(자연·수변·시가지)
- ㉡ 미관지구(중심지·역사문화·일반)
- ㉢ 고도지구(최저·최고)
- ㉣ **방재지구(시가방재)**
- ㉤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 ㉥ 시설보호지구(학교·공용·항만·공항시설)
- ㉦ 취락지구(자연·집단)
-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 834p 학습포인트 수정부분(해당부분 법에서 삭제)

#### 결정의 효력 및 실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지형도면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 결정고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 - 그 2년이 되는 다음날

### ▶ [과년도 출제문제]

☞ 233p [25] 문제의 설문 및 해설란

150kWH → **15kWH**

☞ 252p [2] 문제(주택건설기준 개정으로 현행법상으로는 ②번이 정답이 됨)

정답 : ④ → **②**

[해설] 해설 내용은 최종개정사항의 내용임.

☞ 268p [61] 해설내용 수정

전화설비, 인터폰설비, TV공청설비는 **통신설비**에 해당되며, 전기시계설비는 **정보설비**에 해당된다.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① 정보설비 : 모자식 전기시계설비, 건축물 내 근거리통신망(LAN), 구내정보설비

② 통신설비

㉠ 음성통신설비 : 전화설비, 인터폰설비, 구내방송설비, 무선통신설비

㉡ 영상통신설비 : TV공청설비(케이블TV설비 포함), 영상회의설비

☞ 271p [77] 문제 설문란

양수량 18m<sup>3</sup>/h → 양수량 **13.8m<sup>3</sup>/h**

## 2015년판 『건축기사 4주완성』 2차 정오표 [2015.2.17.]

| page     | 오   | 정   |   |  |    |   |
|----------|---|---|---|--|----|---|
| [구조] 349 | <b>2.</b> 2. 지반조사법<br>④ 표준관입 시험 : 사질지반 밀도 측정(추<br>63.5kg, ~   | <b>2.</b> 2. 지반조사법<br>④ 표준관입 시험 : 사질지반 밀도 측정(추<br><b>중량</b> 63.5kg, ~   |   |  |    |   |
| 350      | 4. 지반의 허용 지내력<br><br><b>표 밀 내용 추가</b>   | 4. 지반의 <b>장기</b> 허용 지내력<br><br><b>※ 지반의 단기허용지내력도<br/>                     = 장기허용지내력도×1.5</b>  |   |  |    |   |
| 351      | 6. 부동침하   | 6. 부동(부등)침하   |   |  |    |   |
| 352      | 2. 1)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br>① 독립기초 : 기둥 하나에 기초판을 하나씩 가<br>지는 기초<br>② 연속(줄)기초 : 조적조와 같은 벽 하부에 연속<br>적으로 설치하는 기초<br><br>2) 지정형식에 의한 분류<br>① 직접기초 : 하중을 기초판으로 직접 지반에<br>전달하는 얇은 기초  | 2. 1)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br>① 독립기초 : <b>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초기둥을<br/>                     지지하는 기초</b><br>② 연속(줄)기초 : <b>조적조의 벽 하부에 연속적으로<br/>                     설치하는 기초</b><br><br>2) 지정형식에 의한 분류<br>① 직접기초 : <b>기초판에서 하중을 직접 지반으로<br/>                     전달하는 얇은 기초</b> |   |  |    |   |
|          | 3. 1) 보통 지정<br>~~~ 밀창(버림) 콘크리트<br>2) 말뚝 지정<br>① 기성콘크리트 말뚝 : ~~~ 8각형 단면  | 3. 1) 보통 지정<br>~~~ 밀창(버림) 콘크리트 <b>지정</b><br>2) 말뚝 지정<br>① 기성콘크리트 말뚝 : ~~~ 8각형 단면 <b>등</b>   |   |  |    |   |
| 353      | <b>4</b> 1. 지진관련 용어<br><br><b>그림수정</b><br><br>① 진원 : 진원역에서의 파괴는 한순간에 전체가<br>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시작되어 일<br>정한 속도로 퍼져 나가는데, 파괴가 최초로<br>시작된 위치   | <b>4</b> 1. 지진관련 용어<br><br><b>그림수정) 진앙깊이 → 진원깊이</b><br><br>① 진원 : <b>지진파괴가 최초로 시작된 위치(지진 파<br/>                     괴는 한순간에 전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br/>                     점에서 시작되어 일정한 속도로 퍼짐)</b>   |   |  |    |   |
| 354      | 2. 2) 내진설계 원칙<br>① 사용 한계상태 : 구조물이 그 목적인 소정의<br>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한계상태  | 2. 2) 내진설계 원칙<br>① 사용 한계상태 : <b>구조물이 목적인</b> 소정의 기능<br>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한계상태  |   |  |    |   |
| 355      | 4) ① 건축물<br>㉔ 건물 내부의 비구조재 제거로 ~   | 4) ① 건축물<br>㉔ 건물 내부의 비구조재( <b>마루,반자 등</b> ) 제거로 ~   |   |  |    |   |
| 365      | 3. 6) 특징<br>~~ 크기는 동일   | 3. 6) 특징<br>~~ 크기는 <b>항상</b> 동일   |   |  |    |   |
| 368      | 2) 표 안<br><br><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개</td> <td>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br/>                             힌지절점(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td> </tr> </table> | 5개  | 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br>힌지절점(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 | 2) 표 안<br><br><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개</td> <td>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br/>                             힌지절점(<b>힌지에 연결된</b> ③은 기준부재<br/>                             가 될 수 없음)</td> </tr> </table> | 5개 | 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br>힌지절점( <b>힌지에 연결된</b> ③은 기준부재<br>가 될 수 없음) |
| 5개       | 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br>힌지절점(③은 기준부재가 될 수 없음)   |   |   |  |    |   |
| 5개       | ①과② 부재는 강절이나 ①과③ 부재는<br>힌지절점( <b>힌지에 연결된</b> ③은 기준부재<br>가 될 수 없음)   |   |   |  |    |   |
| 371      | 3) ② 전단력과 휨모멘트의 관계<br>㉔ 전단력이 ⊕와 ⊖의 전황위치( $S=0$ ) ~<br>㉔ 집중하중 작용점에는 그 하중 크기의 ~<br>㉔ 전단력도보다 휨모멘트도는 한 차수 증가~   | 3) ② 전단력과 휨모멘트의 관계<br>㉔ 전단력이 <b>⊕에서 ⊖로 전환하는 위치</b> ( $S=0$ )~<br>㉔ 집중하중 작용점에는 <b>해당</b> 하중 크기의 ~<br>㉔ <b>휨모멘트도는 전단력도보다</b> 한 차수 증가~   |   |  |    |   |

| page     | 오   | 정  |
|----------|---|--|
| [구조] 372 |   |  |
| 373      | <p>예제 ②<br/>등변분포하중 3kN/m에 대한 ~</p> <p>3 그림 수정</p>   | <p>예제 ②<br/>부등변분포하중 3kN/m에 대한 ~</p>  |
| 376      | <p>2. 1) 반력<br/>① <math>\Sigma Y=0</math>에서<br/>② ~ <math>\therefore R_M = 16(\text{kN}\cdot\text{m})</math></p> <p>2. 1) 반력<br/>그림 수정</p>  | <p>2. 1) 반력<br/>① <math>\Sigma V=0</math>에서<br/>② ~ <math>\therefore M_B = 16(\text{kN}\cdot\text{m})</math></p>   |
| 377      | <p>3. 1) 반력<br/>② <math>\Sigma Y=0</math>에서</p> <p>2) 전단력<br/>① <math>A \leq x \leq 2</math>일 때, ~~<br/><math>S_x = -3x</math><br/><math>S_A = S_{x=2} = -3 \times 2 = -6</math>와 무관하므로<br/>이 구간의 S.F.D는 축과 평행선</p> | <p>3. 1) 반력<br/>② <math>\Sigma V=0</math>에서</p> <p>2) 전단력<br/>① <math>A \leq x \leq 2</math>일 때, ~~<br/><math>S_x = -3x</math> ...x의 1차식이므로 이 구간의 S.F.D는 축에 대하여 사선<br/><math>S_A = S_{x=2} = -3 \times 2 = -6</math> ...x와 무관하므로<br/><del>이 구간의 S.F.D는 축과 평행선 (삭제)</del></p> |

| page                     | 오  | 정       |       |                          |                                |   |         |       |                       |                                     |
|--------------------------|--|---------|-------|--------------------------|--------------------------------|---|---------|-------|-----------------------|-------------------------------------|
| [구조] 380                 | 그림 수정  |         |       |                          |                                |   |         |       |                       |                                     |
| 392                      | 6번 문제 그림 교체  |         |       |                          |                                |   |         |       |                       |                                     |
| 410                      | 2) 산정<br>우측 그림 교체  |         |       |                          |                                |   |         |       |                       |                                     |
| 451                      | 2. 2) ② 표 안<br><table border="1" data-bbox="437 1301 866 1395"> <thead> <tr> <th>구분</th> <th>집중하중</th> </tr> </thead> <tbody> <tr> <td>양단고정보</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집중하중  | 양단고정보                    |                                | 2. 2) ② 표 안<br><table border="1" data-bbox="916 1283 1353 1413"> <thead> <tr> <th>구분</th> <th>집중하중</th> </tr> </thead> <tbody> <tr> <td>양단고정보</td> <td><math>\delta_{max} = \frac{Pl^3}{192EI}</math></td> </tr> </tbody> </table>                                | 구분      | 집중하중  | 양단고정보                 | $\delta_{max} = \frac{Pl^3}{192EI}$ |
| 구분                       | 집중하중   |         |       |                          |                                |   |         |       |                       |                                     |
| 양단고정보                    |  |         |       |                          |                                |   |         |       |                       |                                     |
| 구분                       | 집중하중   |         |       |                          |                                |   |         |       |                       |                                     |
| 양단고정보                    | $\delta_{max} = \frac{Pl^3}{192EI}$  |         |       |                          |                                |   |         |       |                       |                                     |
| 474                      | 1. 1) ④ 표 안<br><table border="1" data-bbox="443 1487 810 1619"> <thead> <tr> <th>온도철근 강도</th> <th>최소철근비</th> </tr> </thead> <tbody> <tr> <td><math>f_y \leq 400\text{MPa}</math></td> <td><math>0.002 \times \frac{400}{f_y}</math></td> </tr> </tbody> </table> | 온도철근 강도 | 최소철근비 | $f_y \leq 400\text{MPa}$ | $0.002 \times \frac{400}{f_y}$ | 1. 1) ④ 표 안<br><table border="1" data-bbox="922 1487 1289 1619"> <thead> <tr> <th>온도철근 강도</th> <th>최소철근비</th> </tr> </thead> <tbody> <tr> <td><math>f_y &gt; 400\text{MPa}</math></td> <td><math>0.002 \times \frac{400}{f_y}</math></td> </tr> </tbody> </table> | 온도철근 강도 | 최소철근비 | $f_y > 400\text{MPa}$ | $0.002 \times \frac{400}{f_y}$      |
| 온도철근 강도                  | 최소철근비  |         |       |                          |                                |   |         |       |                       |                                     |
| $f_y \leq 400\text{MPa}$ | $0.002 \times \frac{400}{f_y}$   |         |       |                          |                                |   |         |       |                       |                                     |
| 온도철근 강도                  | 최소철근비  |         |       |                          |                                |   |         |       |                       |                                     |
| $f_y > 400\text{MPa}$    | $0.002 \times \frac{400}{f_y}$   |         |       |                          |                                |   |         |       |                       |                                     |
| [과년도] 10                 | 42번 문제 그림 교체   |         |       |                          |                                |   |         |       |                       |                                     |

## 2015년판 『건축기사 4주완성』 1차 정오표 [2015.2.13.]

| page     | 오                                      | 정  | 비 고    |
|----------|--|--|--------|
| [계획] 156 | 정답 및 해설 수정                             | [해설] <b>가변형</b> -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장표현에 대한 최대한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한다. | 정답 : ㉠ |
| [시공] 239 | ㉦ 지붕보                                  | ㉦지 <b>중</b> 보  |        |
| 243      |  | ㉦ <b>하단참조</b>  |        |
| [설비] 633 | [16]번 정답 수정                            | ㉠ → ㉡  |        |
| [법규] 683 | 핵심PLUS [예1] 라. 바닥면적이 300㎡ 인 교회 [해설] 수정 | 라. 바닥면적이 500㎡ 인 교회 [해설]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교회              |        |
| 693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693      | ※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 중에서...                   | 운수시설(여객 <b>용</b> 시설만 해당)                               |        |
| 697      | 안전관리예치금... 5000㎡                       | <b>1000㎡</b>   | 법 개정   |
| 699      | [표] 중에서 3째줄칸                           | 다중생활시설→ <b>자원순환관련시설</b>                                |        |
| 724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44      | 5. ㉡..㉢ 중에서                            | 여관, 여인숙 ... 삭제   | 법 개정   |
| 759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61      | 하단에서 7째줄                               |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 <b>지역개발사업구역</b>                        |        |
| 771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80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81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82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90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91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798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00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04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12      | 학습포인트에 추가사항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21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30      |  | ㉦ <b>하단참조</b>  |        |
| 831      |  | ㉦ <b>하단참조</b>  | 법 개정   |
| 832      |  | ㉦ <b>하단참조</b>  |        |
| 834      | 학습포인트 속 둘째줄                            | 결정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 → <b>지형도면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b>             |        |
| 842      | [20]㉡항 수정                              | ㉡ <b>지형도면고시시일로</b>                                     |        |

## ☞ 하단참조 내용

[건축법규 개정,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43p [표] 수정부분

-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기초, 보요, 기둥, 벽 등의 측벽)  
콘크리트 재령에 의한 존치기간 (단위 : 일) 삭제

☞ 693p [표] 수정부분

- ②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 삭제  
④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724p [표] 수정부분(1. 및 8.항 추가)

###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 구분  | 구조계산 대상 건축물  |
|---|--|
| 1. 층수   | 3층 이상<br>(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는 지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 2층 이상) |
| 2. 연면적  | 1,0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 3. 높이   | 13m 이상   |
| 4. 처마높이   | 9m 이상  |
| 5. 경간   | 10m 이상<br>*경간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   |
|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
| 8.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  |

☞ 759p [표] 수정부분

###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적용제의 대상행위  | 적용제의 대상지역 또는 기준   |
|--|---|
|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지역</li> <li>•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li> <li>• 건축협정구역</li> <li>•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li> </ul> |

☞ 771p [표] 수정부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규모  | 용도 및 협력사항 |
|---------|--|-----------|
| 건축구조기술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층 이상 건축물</li> <li>• <b>특수구조 건축물</b></li> <li>• 다중이용 건축물</li> <li>•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li> </ul> |           |

☞ [참고]

▶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780p [표] 수정부분

(1) **특별건축구역의 대상 사업구역과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구분      | 구역 또는 건축물  |
|---------|--|
| 대상 사업구역 |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다음의 사업구역<br>㉠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혁신도시의 사업구역<br>㉢ 경제자유구역    ㉣ 택지개발사업구역<br>㉤ 공공주택지구    ㉥ 도시개발구역<b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br>㉧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br>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         | ※ 대상 구역의 제외<br>㉠ 개발제한구역    ㉡ 자연공원    ㉢ 접도구역    ㉣ 보전산지<br>㉤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 교재의 표 내용 중에서... ㉠, ㉡, ㉢, ㉣, ㉤ 항 삭제

☞ 781p 수정부분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① 지정신청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30일 이내
- ③ 건축허가: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모니터링 대상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처: 허가권자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는 5년 미만

(건축법 일부규정 배제, 완화 건축물 : 2년마다, 기타건축물 : 2년마다)마다 제출]

☞ 782p 수정부분(개정, 적색부분 추가)

## 2) 적용의 완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다음의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법 제49조)
-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법 제50조)
- ㉢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법 제50조의 2)**
-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법 제51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법 제52조)
- ㉥ 지하층(법 제53조)
- ㉦ 건축설비기준 등(법 제62조)
- ㉧ 승강기(법 제64조)
-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 790p 수정부분

##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직

| 구분          | 설치    | 분쟁조정업무의 범위              | 위원의 수                           | 임기             |
|-------------|-------|-------------------------|---------------------------------|----------------|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국토교통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허가건축물 | 15인 이내<br>(위원장·부위원장<br>각 1명 포함) | 3년<br>(공무원 제외) |
|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건축물         |                                 |                |

☞ **줄친부분 삭제**

☞ 791p 수정부분

### ▶ 조정 등의 신청

-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6.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강제징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강제징수: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

☞ 798p 수정부분

### 3.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 건축물   |                                | 원 칙  | 95% 이상 |
|------------|--------------------------------|--|--------|
| 단 서<br>규 정 | 건축물의<br>연면적 중<br>주차장 외<br>의 용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br>이 아닌 경우        | 95% 이상 |
|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 70% 이상 |

☞ 800p 수정부분

####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804p 수정부분

- ④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812p 수정부분(추가)

#### ㉔ 50대

- 주차규모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 : 출입구 분리 또는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주차규모 50대 이상의 자주식주차장 경사로 : 너비 6m 이상의 2차선 경사차로 확보 또는 진입·진출차로를 분리
- 주차대수 50대 이상(노상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
- 주차대수 50대 이상(노외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

☞ 821p 수정부분(표에 추가) 신설사항

#### ⑤ 지구단위계획

##### ⑥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830p 수정부분(줄친부분 삭제)

| 지 구  | 지구의<br>세분화                      | 규 제 내 용 |     |    |    | 세부 규제사항              |
|------|---------------------------------|---------|-----|----|----|----------------------|
|      |                                 | 용도      | 형 태 |    | 색채 |                      |
|      |                                 |         | 밀도  | 높이 |    |                      |
| 경관지구 | 자연,<br>수변,<br>시가지.<br><b>일반</b> | ●       | ●   | ●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br>도시계획조례 |

☞ 831p 수정부분 [표]중에서...

|         |                         |   |
|---------|-------------------------|---|
| 시가화조정구역 | <b>시·도지사</b><br>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br>·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br>※ 시가화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하 |
|---------|-------------------------|---|

☞ 832p 수정부분(줄친부분 삭제)

1. 지구의 세분

- ㉠ 경관지구(자연 · 수변 · 시가지 · **일반**)

☞ 최근 개정, 신설된 법 주요내용 추가정리

▶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②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③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 배수(排水)·환기시설의 재료
- ④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건축물의 범죄예방**(법 제53조의2, 영 제61조의 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상기 ①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건축협정의 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정비구역
- ㉢ 존치지역
- ㉣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